

이사회 운영규정

시행일: 2023년 7월 20일

주식회사 동성케미컬

제·개정 이력

제·개정 이력	비고
2008.5.1. 제정	
2011.11.1. 개정	
2016.9.1. 개정	
2018.7.1. 개정	
2021.4.1. 개정	
2022.7.1. 개정	전문위원회 신설
2023.7.20 개정	이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신설

목 차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범위)
- 제 3 조 (권한)

제 2 장 구성

- 제 4 조 (구성)
- 제 5 조 (의장)

제 3 장 회의

- 제 6 조 (종류)
- 제 7 조 (소집권자)
- 제 8 조 (소집절차)
- 제 9 조 (결의방법)
- 제 10 조 (부의사항)
- 제 10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 제 10 조의 3 (이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 제 11 조 (권한위임)
- 제 12 조 (감사의 출석)
- 제 13 조 (관계인의 출석)
- 제 14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제 15 조 (의사록)
- 제 16 조 (간사)
- 제 17 조 (기타)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동성케미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 회 개최한다. 단, 부의사항 또는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

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한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전자메일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 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 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 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제 10 조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주주총회부의안건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
 - (4) 자본의 감소 (주식소각 포함)
 - (5)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9)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1)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3)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 (14)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5) 법정준비금의 감액
-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이사회 및 경영에 관한 사항

- (1)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승인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7)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8) 국내외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9) 사업구조조정
- (10) 임원 보수 기준
- (11) 기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20 억원을 초과하는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2) 20 억원을 초과하는 신규시설 투자, 시설 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 (3) 20 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20 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 (단, 금융거래는 같은 호 (5)목에 의한다)
- (5) 중요한 금융거래

- 1) 50 억원을 초과하는 차입계약

다만, 기존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차입 및 기 계약된 차입금 한도 내 집행은 제외한다.

- 2) 20 억원을 초과하는 고위험 금융상품계약

다만,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 및 기 집행된 계약 한도 내 집행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20 억원을 초과하는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거래 계약

- 4) 20 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5) 중요한 금융 계약에 대한 사항 중 1)~4)에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한 20 억원을 초과하는

기타의 금융 계약

- (6) 결손의 처분
- (7)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8) 신주의 발행
- (9) 사채(BW, CB 등 주식연계사채 포함)의 모집, 발행
-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 (11)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 (12)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13)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자회사 및 관계회사 제외)

5. 기 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가 보고를 요청한 경우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3.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4.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평가 보고
- 5. 기부, 찬조의 연간 계획 수립 및 집행 실적 보고
-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0 조의 2(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0 조의 3(이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 ①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 아닌 임직원, 내·외부 관계자 등에게 이사회 출석,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0>

제 11 조(권한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 12 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 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6 조 (간사)

- ① 이사회에 의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 17 조 (기타)

본 이사회 운영규정이 정관 또는 유관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에 반하거나 또는 충돌이 생기는 경우 정관 또는 유관법규가 우선한다.

부 칙 (2023.7.20.)

제 1 조 (시행일)

본 이사회 운영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